

[별지 제1호의 18서식](신설)

우수제품 직접생산 협약서

당사는 「우수조달물품 지정·관리규정」제13조에 따른 제조공정표(증빙자료 포함)를 작성·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약합니다.

1. 본 제품은 우수제품 지정신청 기술과 연관된 핵심공정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약합니다.
2. 우수제품 지정 이후 지정신청 시 제출한 핵심공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.

202 년 월 일

제출자(회사명) :

대 표 :

(인)

조달청장 귀하